

#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화에 따른 중국 보세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bility of the Bonded Area as a Countermeasure of the  
Change of Chinese Processing Trade System

이용근(Yong-Keun, Lee)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주저자)

홍재성(Jae-Sung, Hong)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박사수료(공동저자)

## 목 차

I. 서 론	V. 중국 보세구역에서 가공무역의 활용성 및 한계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VI. 결 론
III.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변화	참고문헌
IV. 중국 보세구역의 현황	Abstract

## 국문초록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제어 : 중국, 가공무역, 보세구역

## I. 서론

개혁개방 후 중국의 대외무역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78년 무역총액은 약 206억 달러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약 2조 1738억 달러로 1978년의 105배에 달했다. 2007년 중국은 수출액에서 세계 2위, 수입액에서는 세계 3위로 도약해 명실상부 무역대국이 되었다. 형태별로 보면 가공무역의 비율은 96년부터 13년 연속해 수출액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1년 중국의 대외 수출 1조 8,986억 달러 가운데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약 8,354억 달러로 전체의 44%를 점하고 있다. 예전보다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중국 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은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 고용창출 등의 면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조치 등의 제도로 인해 가공무역을 둘러싼 환경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 억제, 환경보존, 자원 확보의 차원에서 “가공무역금지목록”<sup>2)</sup>의 재검토를 재차 시행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계획한 새로운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경과정에서 미국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을 행하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제도 변경의 완화측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에 맞추어 다시 제도의 개혁에 따른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는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행정당국의 가공무역 정책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국진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가공무역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도 그에 대한 정보 및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다.<sup>3)</sup>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및 FTA와의 관계 등을 고찰한 것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현행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제도 변경이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도연구에 대한 대응방안 대부분이 현행 규제 제도의 주의 당부에 그친 측면이 강하다. 즉,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

1) 韓堅放, “中國における加工貿易の産業構造高度化と課題”, 『關西外國語大學研究論集』, 第90号, 2009, p.83.

2) 최근 2010년 11월 1일부로 공포된 가공무역 금지목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2009년 공고에서 금지류로 분류된 1,759개에 44개가 더해졌다.(商務部, 海關總署聯合公告, 2010年, 第63号)

3) 정환근,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44.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제도 연구를 통해 중국 가공무역 정책의 변화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투자기업들이 가공무역을 중국에서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보세구역의 활용방안을 언급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3장에서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품목에 따른 분류, 가공무역과 관련된 보증금, 가공무역과 관련된 설비에 한해 제도의 변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보세구역 활용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4장은 보세구역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보세제도를 분석하여 설명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 1. 이론적 배경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분업 추진에 의해 중국가공무역은 단기간에 중국의 수출총액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으로 향했다. 그것은 결국 중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초래했고 나아가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가공무역제도의 성립 초기, 외자기업들이 가지고 온 무역흑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수입 물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공무역에서의 밀수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밀수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각종의 규제를 통해 밀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생산비용과 자금비용을 증가시켰다. 그에 대해 외자기업들은 규제를 완화를 시킬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로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들이 가져오는 외화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 즉, 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외자기업들은 규제 정책에 대한 경영악화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로비활동을 통해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외자기업들이 가져오는 무역흑자는 중국의 타국과의 무역에서 마찰의

화근이 된다. 중국정부는 무역흑자해소를 위해 노동집약형의 외자기업들을 가공무역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밀수대책으로 확립한 보증금적립제도 등을 활용하여 노동집약형 외자기업들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한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외자기업들은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로비활동을 다시 시도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 규제는 거의 완화되지 않고 노동집약형 외자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류 품목을 확대하여 발표함으로써 외자기업들은 더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최근의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변혁은 외자기업들에 의한 로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 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무역마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의 대가인 완화 정책이 사라진 현행의 중국 가공무역제도는 앞으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8월 이래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불황에 의한 수출둔화를 개선하기 위해 잠정적인 가공무역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책은 중국정부의 의도에 따라 결국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분석

가공무역으로 인한 수출입액은 총수출입액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즉, 일반무역과 기타무역의 합보다 많은 수치로 중국경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경제에 가공무역의 역할은 상당하며 제도 변경으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경제성과 측면에서 본 가공무역제도의 선행연구로서 장영수·장춘봉(2008)<sup>4)</sup>은 중국투자기업들의 후속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먼저 대중국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설명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중국정부의 세금혜택과 같은 정부정책과 수출입관리규제와 같은 현지리스크가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河原昌一郎·明石光一郎(2010)<sup>5)</sup>은 중국 가공무역의 실태와

4) 장영수·장춘봉,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1호, 2008, pp.133-162.

구조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GTAP 모델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등을 통하여 FTA와 가공무역간의 관계 및 중국의 FTA에 대한 전략을 고찰하였으며 邢予靑(2011)<sup>6)</sup>은 iphone을 예로 들어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분업 추진에 의해 중국 가공무역이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생겼으며 결국에는 무역마찰을 일으켜 제도개혁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구조적인 모순관계를 제시하였다.

반면 제도 측면에서 본 가공무역의 선행연구로서 한상현(2001)<sup>7)</sup>은 1999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공무역관리제도가 한국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환곤(2008)<sup>8)</sup>은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확대와 증치세 환급을 인하 등 중국의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창열(2010)<sup>9)</sup>은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와 같은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중국 진출전략 대응책으로 내수시장의 적극적 개발이나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충충(2011)<sup>10)</sup>은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변화가 중국 현지의 한국수출기업들과 현지의 가공무역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대응방안으로 가공기술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의 변화, 내수시장 공략, 제3국으로의 공장이전을 들었다. 고창(2012)<sup>11)</sup>은 중국가공무역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중국 가공무역환경 변화의 당위성을 직시함과 동시에 한국 수출 기업들과 현지에서 가공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서정(2012)<sup>12)</sup>은 중국 보세구의 운영과 발전전략에 관해서 천진보세구의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개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천진 보세구의 SWOT 분석을 통해 보세구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井上和子(2007)<sup>13)</sup>은 중국 가공무역 환경변화에 대해 가공무역이 발달한 주장삼각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韓堅放(2009)<sup>14)</sup>은 중국 가공무역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제지책 및 대응책으로의 제도 변경인 가공무역 산업구조 고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5) 河原昌一郎·明石光一郎, “中國の加工貿易とFTA戰略”, 『農林水産政策研究』, 第17号, 2010, pp.35-58.

6) 邢予靑, “國際分工与美中貿易逆差: 以iphone爲例”, 『金融研究』, 2011(3), pp.18-29.

7) 한상현,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7집, 2001, pp.1-23.

8) 정환곤, 전계논문, 2008.

9) 최창열,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pp.103-124.

10) 고충충,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경이 한국의 중국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 고창,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정책변화와 한국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조서정, 『중국 보세구 운영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3) 井上和子, 『中國の加工貿易の環境変化と珠江デルタの産業構造高度化』, 日本貿易會 月報, 2007, pp.56-59.

14) 韓堅放, 전계논문, pp.83-102.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보다 실체적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론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제도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가공무역제도의 법률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론 연구를 통해 앞으로 규제 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제도 연구를 통해 외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변화

#### 1. 중국의 가공무역

##### 1) 개요

가공무역은 주로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중국내에서 가공생산을 거쳐 그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원재료 수입단계에서의 과세(관세, 증치세, 소비세)가 유보되는 형태의 무역이다.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은 세관총서령(2004) 제113호 3조에 따르면 “경영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보조재료, 부재료, 포장재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을 행하여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키며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공무역은 보세구나 수출가공구와 같이 세관이 관리하는 지역과 비보세구인 일반지역에서 행해진다.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정의 수속을 거쳐 보세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가공무역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무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으로 나누어지며 진료가공과 내료가공 역시 세관총서령(2004) 제113호 3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진료가공은 수출입이 매매형태인 유상으로 행해지는 거래이며 그 매매차액이 가공기업의 이익이 되는 형태이다. 반면에 내료가공은 원재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이 무상으로 행해지며 가공기업에 대해서는 가공임만이 지불되는 형태이다.

## 2) 중국식 가공무역의 장단점

중국경제의 발전은 가공무역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수출입 무역액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액은 일반무역에 의한 수출입액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다. 2009년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무역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도 감소했지만 2010년 다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 측면에서는 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총액의 50%이상을 가공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생산기지라고 하는 지위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수치가 오늘날의 중국을 이루어낸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표 1> 중국의 형태별 수출입 무역액 추이

(단위: 억달러)

연도	일반무역		가공무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4	2,436	2,482	3,280	2,217
2005	3,151	2,796	4,165	2,740
2006	4,163	3,332	5,104	3,215
2007	5,386	4,287	6,177	3,684
2008	6,626	5,727	6,752	3,784
2009	5,298	5,339	5,870	3,234
2010	7,207	7,680	7,405	4,188
2011	9,171	10,075	8,356	4,708

출처: 中国海关总署(<http://www.customs.gov.cn>)

주: 억달러 이하의 단위는 반올림 한 것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식 가공무역의 플러스 요인은 첫째, 외자도입의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둘째, 중국 국내산업의 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중국 무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에 중국식 가공무역의 마이너스 요인은 첫째, 가공무역의 비대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불러일으켜 세수 수입의 원천인 관세, 증치세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저가상품의 대량수출로 인해 수출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중국 독자의 기술개발과 자

체 브랜드의 확립이 저해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가공무역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입 불균형 및 미국, 유럽과의 무역마찰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가공무역에 대한 제도 변경을 불러일으킨 배경이 된다.

## 2. 중국 가공무역의 제도 변경

### 1) 가공무역의 분류

가공무역의 분류는 가공된 제품에 따라 “허가류, 제한류, 금지류”로 나누어진다.

금지류로 분류되는 것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거나 가공무역관련기관이 보세수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그리고 「일부상품에 대한 수출증치세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 추가 기술에 관한 통지(재세, 2006) 139호」<sup>16)</sup>에 따라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중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분류되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공고한 「2009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sup>17)</sup>에서 1,759개의 품목이 가공무역 금지류에 분류되었다. 본 공고는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등의 보세감독지역의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금지품목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보세구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본 공고에 의한 가공을 금지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금지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운용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 수입금지 분류품목의 경우 심가공결전<sup>18)</sup>에 따라 전입<sup>19)</sup>되거나 보세구역의 기업이 실제로 가공을 한 후 구외<sup>20)</sup>에 수출하는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류의 수입관리를 행하지 않는다. 둘째, 수출금지 분류품목의 경우 심가공결전에 따라 전출<sup>21)</sup>되거나 보세구역의 기업에 의

15) 石見辰彦, 「2010年版最新中國貿易・稅關實務の詳細解説&實踐マニュアル」, プリコ, 2009, p.96.

16) 중국어표기 「關於調整部分商品出口退稅率和增補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的通知 (財稅, 2006) 139號」

17) 중국어표기 「2009年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商務部, 海關總署, 2009) 第37號」

18) 심가공결전에 대한 정의는 「세관총서령 제113호, 가공무역화물에 관한 관리감독 방법(海關總署令第113號, 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의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심가공결전이라 함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재료로 가공을 한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에 이송하는 것이며 게다가 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19) 가공무역은 가공완료후 반드시 수출할 것을 전제한 제도로 국내에서의 처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가공공장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가공결전은 인정된다. 만약 이러한 심가공결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가공을 위탁한 기업은 A라는 기업에 반제품 가공을 의뢰하고 수입해 다시 수출해 완제품으로 가공을 마친후 수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때 반제품을 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을 전입이라 한다.

20) 이하 구외라 함은 보세구역 이외의 지역을 칭함

21) 심가공결전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반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과정을 전출이라 한다. 즉,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의 심가공결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공무역의 특성상 외국으로 반출한 후 다시 반입해야 한다. 이럴때 사용되는 개념을 전출이라 한다. 하지만 심가공결전이란 제도로 인해 이러한 전입과 전출의 과정이 생략되고 가공무역 기업간 가공을 위해 물품을 이송할 수 있다.



해 가공생산된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류의 수출관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2009년의 금지류 상품목록에 44개의 품목을 더하여 수출 혹은 수출입을 금지시켰다.<sup>22)</sup>

제한류로 분류되는 것은 수입원재료 및 제품의 내외 가격의 차가 커서 세관의 관리감독이 곤란할 경우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가공무역의 메리트를 축소시키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2007년 7월 24일 공동으로 제44호 공고에 의해 「가공무역 제한류상품목록」<sup>23)</sup>을 공포하여 제한류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강화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분류 품목이 394품목에서 2,247품목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제한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연안지역에서의 신설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라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2008년에 공고한 제97호에 의해 제44호의 시행은 정지되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제44호의 공고가 실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가류로 분류되는 것은 제한류와 금지류를 제외한 모든 가공무역 제품의 품목을 말하는 것이다.

## 2) 가공무역의 보증금제도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을 행한 후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한, 부품 수입을 보세로 행하는 제도이지만 특정의 기업과 거래상품에 따라 수입세액(관세, 증치세, 소비세)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적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무역보증금제도”라 한다.

가공무역보증금의 적립에 대한 규정은 1999년 국무원에서 공고한 제35호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제도 완비의 의견에 관한 통지」<sup>24)</sup>에 의해 개시되었고 2007년 상무부와 세관총국이 공고한 제44호에 의해 적립의무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의 제 97호에 의해 가공무역보증금제도는 완화되었다.

보증금의 적립여부는 기업 및 상품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어떤 기업인가에 따라 보증금의 적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과연 적립액은 얼마며 그 적립방법은 어떤지가 관건일 것이다. <표 2>는 보증금 적립여부에 대한 규정<sup>25)</sup>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기업 분류에 따라 보증금의 적립액과 적립방법은 다르다.

22) <[http://www.customs.gov.cn/tabid/399/ctl/InfoDetail/InfoID/242951/mid/60432/Default.aspx?ContainerSrc=%5bG%5dContainers%2f\\_default%2fNo+Container](http://www.customs.gov.cn/tabid/399/ctl/InfoDetail/InfoID/242951/mid/60432/Default.aspx?ContainerSrc=%5bG%5dContainers%2f_default%2fNo+Container)> (2012. 6. 16).

23) 중국어표기 「加工貿易限制類商品目錄(2007), 商務部 海關總署, 第44號」

24) 중국어표기 「關於進一步完善加工貿易銀行保證金台帳制度意見的通知(1999), 國辦發 第35號」

25) 국무원(1999) 제35호, 세관총서(2007) 제44호, 세관총서(2008) 제97호의 규정

〈표 2〉 보증금 적립여부에 대한 규정 비교

구분	규정	내용
A류 기업	35호	취급제품에 관계없이 보증금 적립이 불필요
	44호	제한류에 속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보증금의 50% 상당을 적립
	97호	불필요
B류 기업	35호	제한류에 속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금의 50% 상당을 적립
	44호	35호의 규정과 동일
	97호	수입제한품목의 일부에 대해서 50%의 실전 <sup>26)</sup>
C류 기업	35호	취급제품에 관계없이 보증금 적립이 필요
	44호	35호의 규정과 동일
	97호	100%의 실전
D류 기업	97호	가공무역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상외

출처: 규정 35, 44, 97호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적립된 보증금은 수출이 종료되고 세관이 발행하는 확인통지서를 은행에 제시함에 따라 보통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난 후의 금액이 반환된다.

이렇게 기업 및 상품에 따라 보증금의 적립은 의무화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이 보증금을 요하지 않는 기업에 분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거나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현재는 보증금을 요하는 상품에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가공무역의 수입설비

가공무역을 행하는 것에 맞춰 가공위탁자인 외국기업이 가공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를 “무상제공설비”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이러한 설비에 대해 보세수입이 인정된다.

수입 설비 관련 통지인 제383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sup>27)</sup> 첫째, 가공기업내에서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설비는 가공무역에 대한 인가를 얻은 공장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나 매각하는 것은 금지된다. 둘째, 관세나 증치세의 유보조치가 적용되어 보세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이

26) 실전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C류 기업이나 제한류에 분류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B류 기업이 해당되며 공전은 보증금 대장관리의 적용은 받지만 보증금의 적립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27) 가공무역수입설비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대외무역경제정책국(1998), 제383호

만료되고 난 후 세관에 감독해제 신청을 행하여 보세수입을 하거나 해외에 재수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상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세수입이 인정되는 것은 가공위탁자가 무상 제공하는 설비에 한정되며 일부분에 대해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세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83호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수입되던 설비의 증치세에 대해서는 보세 및 면세제도가 중지되었고<sup>28)</sup> 관세에 대해서도 특정의 대형, 정밀, 고속 NC기기 등에 있어서는 관세의 보세 조치가 중지되었다.<sup>29)</sup> 그 결과 보세수입의 대상이 되는 무상제공설비는 극히 한정되었다.

## IV. 중국보세구역의 현황

### 1. 보세구

#### 1) 개요

중국의 보세구는 1990년에 국무원에 의해 첫 번째로 상하이의 한 지역인 상해외고교에 보세구가 설립됨을 기점으로 현재 중국 전 지역에는 15개<sup>30)</sup>가 있다.

보세구의 구내에는 대개 생산형기업과 서비스기업 그리고 무역회사가 상당수 입주해 있다. 보세구는 기타의 보세구역과 달리 상당수의 무역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 이유는 2004년 6월 이전에는 외자무역기업의 설립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로 보세구의 구내에서만 외자기업의 무역회사설립이 시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는 이런 보세구의 무역회사는 국내유통권과 무역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이후 보세구의 무역회사도 외자를 투자하는데 있어 상업영역 관리방법의 수속에 기인해 국내유통권과 무역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세구의 무역회사도 통상의 상업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 2) 보세구에서의 가공무역

보세구내에서 가공무역을 행할 경우는 가공무역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28) 제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공고(2008), 제43호

29) 세관공고(2008), 제29호

30) 상해외고교(上海外高橋), 천진항(天津港), 대련(大連), 심천사두각(深圳沙頭角), 심천복전(深圳福田), 심천염전(深圳鹽田), 유두(汕頭), 광주(廣州), 장가항(張家港), 청도(靑島), 영파(寧波), 복구(福州), 하문(廈門), 해구(海口), 주해(珠海)

구내에서 제한분류에 속한 제품에 대해 가공무역을 행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보세구세관관리감독방법, 세관총서령 제65호, 제24조)<sup>31)</sup>

### 3) 보세구에 반입하는 중국 국내의 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 조치

구외인 국내의 화물을 보세구에 반입해도 증치세의 수출환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외로부터 보세구에 이송된 재화에 관해서는 세액환급(면세)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세구내의 기업이 구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구내에 반입한 경우 세무기관에 증치세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고 그 물품을 수출한 경우나 가공후 수출한 경우 규정에 기인해 수출환급신청을 행할 수 있다<sup>32)</sup>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화물을 보세구 경유로 수출(중계수출)해도 보세구로부터 화물이 해외에 반출된 단계에서는 수출통관수속이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증치세환급용의 수출통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수출환급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 4) 구외로의 가공위탁

모든 가공 업무를 보세구의 구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구내의 가공기업이 구외에 가공을 위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만 구외로 가공무역의 위탁이 가능하다.

첫째, 구내에 생산장소를 가지고 가공업무를 전개하고 있어야 한다.(세관총서령 제65호 24조 1항) 즉, 구내기업은 생산형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구외기업에 가공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주요한 가공공정은 구내에서 행해야 한다.(세관총서령 제65호 24조 2항) 즉, 자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보조공정 부분의 가공위탁이어야 한다. 셋째, 구외기업에 위탁하는 가공업무의 기한은 6개월로 한다. 특별히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6개월로 한다. 구외에서 가공을 끝낸 제품은 보세구역에 반송해야 한다. 구외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에 핵소(核銷)<sup>33)</sup>수속을 행해야 한다.(세관총서령 제65호 24조 3항)

31) 이하 세관총서령 제65호라 칭한다.

32) 수출재화세액환급(면세)에 관한 약간의 문제 규정(1995), 재세자, 제92호, 제6조

33) 핵소(核銷)란 가공기업이 가공무역계약을 이행한 단계에서 세관에 의해 행해지는 관리감독을 해제하기 위한 수속을 칭한다.(<http://baike.baidu.com/view/241904.htm>)

## 2. 수출가공구

### 1) 개요

중국의 수출가공구는 2000년에 15개<sup>34)</sup>가 설립됨을 기점으로 현재 중국 전 지역에는 57개가 설립되어 있다.

수출가공구는 원칙상 국무원에 허가를 받은 기존의 경제기술개발구내에 한정해 설립이 인정되며(수출가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잠정적인 방법, 국무원령 제389호 2조)<sup>35)</sup> 구내에는 수출가공기업과 수출가공기업에 생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보관기업 및 세관에 의해 인가받고 가공구내에서 화물의 운반을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운수기업에 한정해 설립을 허가해 준다.(국무원령 제389호 5조) 따라서 구내에서는 소매, 일반무역, 중계무역과 그 외 가공구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국무원령 제389호 6조) 이렇게 경제기술개발구는 활동의 유연성은 낮지만 국내의 부자재를 구내에 반입하는 단계에서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인정되거나 구내에서 가공무역을 행할 때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구내에서의 가공무역에 대해 무역보증금제도의 대상외가 되는 등의 혜택으로 인해 가공무역기업에 한정된 경우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가공구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구내기업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전량을 수출<sup>36)</sup>해야 하는 것과 같은 판로의 한정과 구외로의 심가공결전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많은 수출가공구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구외 심가공결전 거래가 2005년에 인정되어(수출가공구화물의 구외 심가공결전에 대한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26호) 거래의 제약이 적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제한분류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수출가공구와 보세구를 제외하고 연안지역에서의 신설이 금지되는 등의 상대적 혜택으로 수출가공구에 대한 주목과 평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공무역제도의 변경에 따라 연안지역의 수출가공구라 할지라도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 등의 규정(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관리에 대한 잠정방법, 상무부령 제27호 6조)으로 인해 기업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

34) 대련(大連), 북경천축(北京天竺), 천진(天津), 연태(煙台), 위해(威海), 곤명(昆明), 상해송강(上海松江), 항주(杭州), 무한(武漢), 성도(成都), 하문(廈門), 광주(廣州), 심천(深圳), 혼춘(琿春), (소주-싱가폴)蘇州新加坡

35) 이하 국무원령 제389호라 칭한다.

36) 세관의 허가를 취득해서 국내판매를 행할 경우에도 70% 이상은 수출해야 한다.

## 2) 수출가공구에서의 가공무역

수출가공구 또한 보세구와 같이 수출가공구의 구내에서 가공무역을 행할 경우 가공무역보 증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내에서 제한분류에 속한 제품 관련 가공무역을 행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국무원령 제389호 10조)

또한 구내에서 가공무역을 행할 경우 증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국무원령 제389호 12조) 이것은 면세, 공제, 환급방식으로 증치세가 과세되는 보세구와 엄연한 차이가 있다.

## 3) 수출가공구에 반입하는 국내 구외 화물의 증치세 환급 조치

중국 국내의 화물을 가공구역 내에 반입할 때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가공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 수출환급의 적용여부는 반입하는 물품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구내의 생산을 위해 구내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원재료, 금형 등과 구내의 기업 및 행정관리기구가 자기사용 목적으로 구내에 반입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용품은 수출환급이 적용되지만(국무원령 제389호 17조 1,2,4항) 구내의 기업 및 행정관리기구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교통수단, 생활 소비용품에 대해서는 수입화물의 관련 규정을 통해 통관 수속을 이행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것을 규정하였다.(국무원령 제389호 12조 5항) 즉, 자가사용 사무용품외의 생활 소비용품이나 운송수단은 수출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구외로의 가공위탁

구외로부터 수출가공구에 반입된 화물은 구내기업에 의해 실질적인 가공이 행해져 국경외에 수출하는 것이 인정되며(국무원령 제389호 29조) 수출가공구의 구내에서 발생한 폐재료, 불량품 등은 국외에 재수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관의 허가를 받으면 구외에 반출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때 국내 판매에 준하는 수입단계의 과세가 행해진다.(국무원령 제389호 20조)

반면에 구외로 가공위탁을 할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의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구외에 가공위탁을 할 수 있다. 즉, 구내기업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금형이나 반제품 등을 구외에 보내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출가공구를 주관하고 있는 세관장의 허가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은 구외기업으로 하여금 수출가공구 주관세관에 화물의 관세 및 수입단계의 증치세와 상당가치의 보증금 혹은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수출가공구를 나가게 하는 수속을 행하게 할 수 있다.(국무원령 제389호 21조)

### 3. 보세물류원구

#### 1) 개요

중국의 보세물류원구는 2003년에 “국무원방공청, 상해외고교보세구, 외고교항구의 연합에 의한 시행 동의(국방합, 2003, 제81호)”에 의해 상해외고교에 첫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는 “국무원방공청, 보세구, 항만구의 연합에 의해 시험적 활동의 확대를 동의하는 것에 관한 회답(국방합, 2004, 제58호)”에 의해 7개<sup>37)</sup>가 설립되었다. 보세물류원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겠지만 증치세와 관련해서는 증치세의 수출환급에 관한 제도적인 결함을 남긴 보세구에 물류원구를 병설함에 의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립되었다. 즉, 보세물류원구에 관한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34호 2조)<sup>38)</sup>에 따르면 보세물류원구를 보세구의 기획 면적내 혹은 보세구와 인접한 특정의 항만 구역내에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국제물류업을 발전시키는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이라고 칭하여 보세구와의 관련성을 부각시켰다.

#### 2) 보세물류원구에서의 가공무역

보세물류원구 내에서는 상업적 소매, 가공제조, 재생, 해체 및 기타 보세물류원구와 관련이 없는 업무 전개 활동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세관총서령 제134호 8조) 즉, 보세물류원구는 가공에 초점을 둔 보세구역이 아닌 가공된 물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서 보관화물의 유통을 위해 간단한 가공과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의 업무를 전개(세관총서령 제134호 7조 2항)할 수 있지만 보세구 혹은 수출가공구와 같은 가공은 할 수 없다. 보세물류원구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간단한 가공과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라 함은 선별분류, 분할, 선별포장, 계량, 마크 인쇄, 표시 부착, 포장변경, 조립 등의 상업적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보조적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세관총서령 제134호 38조)

#### 3) 보세물류원구에 반입하는 국내 구외 화물의 증치세 환급 조치

중국의 국내 화물을 보세물류원구에 반입할 때에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보세물류원구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모든 물품이 증치세의 수출환급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치세 수출환급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입하는 물품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37) 청도(靑島), 영파(寧波), 대련(大連), 장가항(張家港), 하문(廈門), 심천염전(深圳鹽田), 천진(天津)

38) 이하 세관총서령 제134호라 칭한다.

구내기업의 업무전개에 공급하는 국산화물 및 그의 포장재 그리고 구내행정관리기구 및 그의 경영주체와 구내기업의 사용에 공급하는 국산건설자재, 기계, 관리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환급이 적용되지만(세관총서령 제134호 29조 1,2항) 구내행정관리기구 및 그의 경영주체와 구내기업의 사용에 공급하는 생활소비용품, 사무용품, 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세관총서령 제134호 38조 3항)

#### 4. 보세물류센터(B형)

##### 1) 개요

중국의 보세물류센터(B형)는 2003년에 첫 번째로 소주고신구(蘇州高新區)에 시험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남경용심항(南京龍潭港)과 북경공항(北京空港)에 추가로 설립되었다.

보세물류센터(B형)는 보세물류업무에 특화된 시설로 중국 국내화물을 구내에 반입하는 단계에서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인정되고 구내에서의 상업적 소매 및 가공제조가 인정되지 않는 등 기능면에서 보세물류원구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첫째 보세물류원구는 국무원이 인가하는 개발구이지만 보세물류센터(B형)는 세관총서가 인가하고 중국 국내의 법인이 경영하는 보세물류업무 전개를 위한 장소이다. 둘째 보세물류원구는 항에 인접할 것을 요구하지만 보세물류센터(B형)는 이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보세물류원구는 보수, 검사, 상품전시가 인정되지만 보세물류센터(B형)는 이와 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보세물류센터(B형)에서의 가공무역

보세물류센터(B형)는 보세구나 수출가공구에서 행하는 상업적 소매, 가공제조, 해체와 같은 가공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의 전개 활동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보세물류센터B형에 관한 잠정적인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30호 16조)<sup>39)</sup> 즉, 보세물류센터(B형)는 가공에 초점을 둔 보세구역이 아닌 화물의 보세위탁이나 국제택배 및 배송과 같은 물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물류업무를 전개한다.(세관총서령 제130호 15조 1,3,5항) 이렇게 가공무역을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보관화물의 유통성을 위한 간단한 가공과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세관총서령 제130호 15조 2항)

39) 이하 세관총서령 제130호라 칭한다.



### 3) 보세물류센터(B형)에 반입하는 중국 국내 화물의 증치세 환급 조치

중국의 국내 화물을 보세물류센터(B형)에 반입할 때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보세물류원구와 같은 보세물류센터(B형)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보세물류원구와 같이 모든 물품이 증치세의 수출환급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치세 수출환급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입하는 물품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국내로부터 구내에 반입하는 수출통환수속이 종료된 화물, 구내기업이 자사가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국산기계설비, 관리설비, 검사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이 적용되지만(세관총서령 제130호 33조 1항) 국내로부터 구내에 반입하여 구내기업이 사용하는 생활소비용품, 교통운송용구 그리고 수입된 것으로 구내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관리설비, 검사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세관총서령 제130호 33조 2항)

## 5. 보세항구

### 1) 개요

2005년 중국의 보세항구<sup>40)</sup>로 상해양산항(上海洋山港)이 처음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에는 보세항구와 관련된 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보세항구 관리에 대한 잠정방법 제164호”가 공포되었다. 보세항구는 구내에 가공기업과 서비스기업을 함께 유치할 수 있으며 국내화물을 구내에 반입하는 단계에서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적용된다는 등의 장점으로 자유도와 완성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보세구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 2) 보세항구에서의 가공무역

보세항구에서는 보세형태에서의 가공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가공무역보증금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보세항구관리 잠정방법, 세관총서령 제164호 31조)<sup>41)</sup> 구내기업은 금형, 원재료, 반제품 등을 구외에 반출하여 가공을 해야 할 경우 외주가공을 전개하기 전에 보세항구 주관 세관에 구외 가공을 수주하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공의 기한은 6개월 내로 하며 가공완료후의 화물은 기한내에 구내에 반입하여야 한다.(세관총서령 제164호 29조) 이러한 반입과 관련하여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경우 구내로의 반입을 하지 않

40) 2012년 6월 현재 중국의 보세항구는 상해양산항(上海洋山港), 천진동강(天津東疆), 대련대요만(大連大窯灣), 해남도양포(海南島洋浦), 영파매산(寧波梅山)이 있다.

41) 이하 세관총서령 제164호라 칭한다.

고 구외에서의 심가공결전이 가능한 반면 보세항구는 이와 같은 구외에서의 심가공결전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심가공결전은 불가능하다.

### 3) 보세항구에 반입하는 중국 국내 화물의 증치세 환급 조치

중국의 국내 화물을 보세항구에 반입할 때 증치세의 수출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등과 같지만 모든 물품이 증치세의 수출환급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치세의 수출환급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입하는 물품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즉, 구외로부터 구내에 반입되어 구내기업이 전개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국산화물 및 그 포장자재 그리고 구내기업과 보세항구 행정관리세관에 사용되는 국산토목건설자재, 기계, 관리설비, 사무용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이 적용되지만(세관총서령 제164호 26조 1,2항) 구내기업과 보세항구 행정관리세관에 사용되는 생활소비용품과 교통운송용구 그리고 구외로부터 구내에 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원래 수입되었던 화물, 포장자재, 설비, 토목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세관총서령 제164호 29조 3,4항)

## 6. 기타 보세구역

### 1) 주해원구

주해원구는 2003년 12월 15일에 국무원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세관의 특수 관리감독 구역이다.(주해원구 관리방법, 주해시 인민정부 제91호 2조)<sup>42)</sup> 2007년에는 주해원구를 관리하기 위한 “주해원구 관리방법”이 공포되었다.

주해원구의 특징은 구내에서 마카오측의 기업과 주해측의 기업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각각의 지역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관할구역 세관은 한쪽의 구역에서 다른 일방의 세관으로 기업의 물품이 이동시 통관수속을 필요로 한다.

구내에서는 가공제조, 수리, 연구개발, 해체, 수출입무역, 국제조달, 배송 등과 같은 가공업무 및 물류업무를 할 수 있다.(주해시 인민정부 제91호 6조) 그리고 보세항구 등과 같이 보세형태에서의 가공제조가 인정되고 있지만 가공무역보증금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주해시 인민정부 제91호 10조)

42) 이하 주해시 인민정부 제91호라 칭한다.

## 2)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을 잠정적으로 보세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인정받은 창고로 공용 형태의 보세창고와 자기사용의 보세창고로 분류된다.(보세창고 및 그의 보관화물에 관한 규정, 세관총서령 제105호 3조)<sup>43)</sup> 또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보세창고는 전문형 보세창고라 불리는 액체위험물보세창고, 예비자재보세창고, 위탁판매 및 보수보관창고와 기타 전문형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예비자재보세창고는 자사가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을 행하는 보세창고로서 사용의 용도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의 물품 보관에 한정한다.(세관총서령 제105호 4조)

보세창고는 수출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창고인 수출감관창고와 대비된다. 가공무역의 수입화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서 그 보관기한은 1년이지만 세관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1년 이내의 기한 연장이 인정된다.(세관총서령 제105호 24조)

보세창고에서의 가공무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물을 포장, 분류, 마크의 재인쇄, 분해, 조립 등의 간단한 가공을 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인 가공을 행해서는 안된다.(세관총서령 제105호 22조)

## 3) 수출감관(감독·관리)창고

수출감관창고는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와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세창고로서 수출화물을 잠정적으로 보관하는 보세창고이며 수출 배송형 창고(수출화물의 잠정보관용)와 국내 심가공결전형 창고(심가공결전 화물 반입용)로 분류된다.(수출 관리감독 창고와 그 보관화물에 관한 관리 방법, 세관총서령 제133호 4조)<sup>44)</sup>

수출감관창고는 가공무역의 수출화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서 그 보관기한은 6개월이지만 세관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한 연장이 인정된다.(세관총서령 제133호 22조)

수출감관창고에서의 가공무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 품질검사, 분류, 재포장, 마크의 인쇄, 필름포장, 포장변경 등 유통적으로 가치 부가 서비스를 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인 가공을 행해서는 안된다.(세관총서령 제133호 23조)

43) 이하 세관총서령 제105호라 칭한다.

44) 이하 세관총서령 제133호라 칭한다.

## V. 중국보세구역에서 가공무역의 활용성 및 한계

종래는 비보세구역에서의 가공무역의 편리성이 높아 보세구나 수출가공구에서의 가공무역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2005년 말부터 제기되는 가공무역제도의 변경(제한)에 따라 그 활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투자를 선택하거나 철수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가공무역 규제제도 뿐만 아니라 위엔화 상승,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노동비용의 상승 등도 가공무역기업의 경영을 다각적으로 압박해 생산기지 이전이나 철수를 택한 것이다. 하나의 예로 2009년 코트라의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이전을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만으로 이전을 생각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업체의 형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생산기지 형태 변경이 기타 국가로의 이전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외자기업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규제 정책에 대비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보세구역으로서의 역사 및 활용실적이 적은 기타의 보세구역을 제외한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 한정해 구내에서 행할 수 있는 가공무역의 활용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에 반한 한계점 또한 살펴본다.

### 1. 중국보세구역에서 가공무역의 활용성

#### 1) 제한 및 금지품목에서의 예외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품목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으며 현재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압박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갱신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금지품목에 해당할 경우 비보세구역의 진료가공기업은 일반무역형태, 국내조달, 판매형태 등

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형태 전환은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보세구역에서 가공업을 행하는 기업들은 보세구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공을 행하는 품목이 제한 및 금지품목에 해당되고 난 후의 이전은 불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반면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서 가공무역을 행하고 있던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는 품목개정에 따라 취급품목이 금지분류에 해당한 경우에도 존속 및 보세거래가 인정되고, 제한분류에 해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안지역에서의 신설은 인정하지 않지만 보세구와 수출가공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규정하였다.(상무부, 세관총서 제44호 공고)

## 2) 가공무역보증금에서의 예외

가공무역보증금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C류 기업 및 제한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B류기업에 대해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과했지만 세관총서의 2007년 제44호 공고에서는 적립의무가 확대되어 제한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A류 기업에 대해서도 적립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경우는 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의 지역으로서 국내기업은 적립의무가 없다.(세관총서령 제65호 24조)(국무원령 제389호 10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업이 하위분류에 속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함은 물론 가공무역보증금과 관련한 법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후속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의 지역인 보세구역으로의 투자를 진행시켜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간의 심가공결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기업의 보증금으로 인한 부담을 보세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기업측면에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 3) 수입설비 세금상의 혜택

외상투자산업 지침 목록에 정해진 장려하는 산업에 분류된 기업이 총투자의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자기사용설비에 대해서는 면세수입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래의 개정에서 제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분류된 기업에 대한 장려하는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의 조치가 폐지되어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면세수입조치가 삭제되었다.<sup>45)</sup> 이러한 점에서 보

45) 외상투자산업 지침목록(2007), 상무부령 제57호

세구와 수출가공구의 경우 국내기업이 자기가 사용하는 생산 및 관리설비에 대해서는 비장려분류기업이라도 면세수입이 가능하다.(보세구 세관관리감독방법, 세관총서 관리감독처 제 594호)(국무원령 제389호 17조)

또한 수출가공구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 자기가 사용하는 국산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증치세의 환급조치가 인정된다.(국무원령 제389호 27조) 비보세구역의 장려하는 산업에 분류된 기업도 자기사용설비의 증치세 면제 조치는 인정되고 있지만 적용시의 수속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수출가공구의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가공구 관련 규칙에서 수출가공구는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기업의 유치에 주력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 국가의 산업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기업의 진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동부 연해지역의 수출가공구는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형기업의 신규진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sup>46)</sup>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들을 보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 외자기업들로 하여금 보세구역으로의 이전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보세구역에 대한 세제 감축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공무역에 대한 세계상의 혜택변화를 주시해 기존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보조금의 형식으로 보전을 해 주는 방법과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중국보세구역에서 가공무역의 한계

### 1) 판매처의 제한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수출가공구는 수출형 기업만이 입주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명확히 한 곳으로 예외적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최대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출가공구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업은 경영기간내에는 수출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 판매정책의 변경에 대응 할 수 없다.

이와 비교해 비보세구에 생산형기업을 설립해 진료가공허가를 취득했지만 후에 국내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진료가공의 신청을 행하지 않으면 즉, 보세수입의 권리를 방치하면 국내 판매로의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조직을 변경하지 않고 판매정책의 변경에 대응 할

46)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2005), 상무부령 제27호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은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주시함은 물론 자사의 전략이 내수가 목적인지 현지에서 본국 혹은 제3국으로의 수출이 목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보세구역을 활용할 것인지 비보세구역의 활용을 지속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외주가공의 제한

### (1) 수출가공구의 경우

수출가공구의 외주가공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 필요한 경우 반제품 등을 구외에 송부해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가공구를 주관하고 있는 세관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외주를 받은 구외기업은 수출가공구를 주관하고 있는 세관에 화물의 수입에 상당하는 관세 및 증치세 등의 보증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구외에서의 가공기한은 가공구의 세관장이 계약기한을 참조하여 심사 및 확정한다. 그리고 가공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한내에 화물을 구내에 반입해 소정의 심사 및 수속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국무원령 제389호 19,20,21조)

### (2) 보세구의 경우

보세구의 외주가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구내에 생산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둘째, 기존에 정식으로 가공 업무를 개시하고 있을 것 셋째, 주요한 가공공정은 구내에서 행하며 보조적 공정을 구외에 외주할 것, 마지막으로 위탁가공기한은 6개월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 세관의 허가를 얻어 6개월 이내의 기한은 연장된다.(세관총서령 제65호 23조)

이와 같이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외주가공은 비보세구역에 비해 다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활용측면을 고려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행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즉, 제품의 가공을 위한 구외로의 반출입 제한은 비보세구역의 유연성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 보세구역의 혜택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외주가공의 제한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 투자 및 활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심가공결전<sup>47)</sup>의 제한

이전의 수출가공구 기업은 심가공결전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출가공구 화물의 구외 심가공결전의 관리방법에 의해 2005년 5월부터 구외기업에 심가공결전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가공결전 수속을 규정하고 있다.<sup>48)</sup>

#### (1) 심가공결전처

다른 수출가공구기업, 보세구기업, 구외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심가공결전을 행할 수 있다.

#### (2) 구내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화물

수출가공구내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행하지 않은 보세화물을 구외에 심가공결전하는 것은 금지한다.

#### (3) 심가공결전여가

전출기업인 수출가공구기업은 “수출가공구관리위원회”의 동의문서를 취득하여 수출가공구 소관 세관에 등록 수속을 행하고 난 후 심가공결전이 가능하다.

전입기업측이 다른 수출가공구기업이거나 보세구기업인 경우 소관 관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심가공결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외가공무역기업의 경우는 소관 대외경제무역부문의 동의가 필요하다.

#### (4) 심가공결전수속

다른 수출가공구나 보세구에 대한 심가공결전의 경우 각각의 주관세관에서 심가공결전 수속을 행한다.

반면 구외가공무역기업의 경우는 전출, 전입기업이 전출지의 소관세관에서 심가공결전 수속을 행한다.

이와 같이 수출가공구에 대한 심가공결전의 제한은 세관총서령, 2005, 제126호에 규정되어 있지만 보세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공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세구에 대해서는 구

47) 외주가공은 구내기업이 구외기업에 가공의 일부를 위탁한 후에 다시 구내에 인취하는 형태이지만 심가공결전은 구외 기업에 보세형태로 화물을 인도해 2차 가공을 행한 구외기업이 원칙으로써 직접 수출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48) 수출가공구화물 구외심가공결전 관리방법(2005), 세관총서령 제126호



외외주가공의 규정에 기인해 심가공결전을 심사하고 있다.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의 심가공결전 거래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비보세구에서는 심가공결전 거래가 자유로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주장지역에서는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심가공결전에 관해서도 증치세의 과세방식으로서 불징수 및 불환급(심가공결전에 관해서는 증치세의 과세대상 외의 거래) 방식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보다 심가공결전이나 외주가공의 거래 실시가 비교적 용이한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비보세구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세구역에 대한 혜택 정책과 현재 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으로의 후속투자나 설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자사의 경영 형태가 보세구역을 활용했을 때 혜택보다 심가공결전의 자유로움이 보다 필요하다면 비보세구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기업에 따라 보세구역의 활용성은 달라질 것이다. 즉,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제도가 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개도국의 경제성장 패턴은 노동집약형 및 저부가가치형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그에 부수되는 가공임 등에 기인해 발전을 거듭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또한 노동 및 저부가가치형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 및 저부가가치형의 제품을 가공을 통해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중국의 산업분포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상대 노동비가 저렴한 중국에서의 대량 생산에 이은 제3국으로 수출은 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노동 및 저부가가치형의 가공무역을 탈피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2004년의 가공무역제도 변경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제품에 따라 가공무역을 제한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을 공포한다. 또한 기업이나 상품에 따라 가공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가공무역보증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 및 저부가가치형 제품을 기존에 생산하던 기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현행 가공무역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

법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보세구역은 그 기능을 "가공"과 "물류"라고 했을 때 가공거점과 물류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구역, 가공거점으로서의 기능만을 갖춘 구역, 물류기능만을 갖춘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보다 보세구역으로서의 역사와 그동안의 활용실적이 많은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 한해 활용도를 제시하였다. 그 활용도를 요약해 보면 기업이 보세구에서 가공무역을 영위할 경우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제한 및 금지품목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보세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자사의 취급품목이 금지분류에 해당한 경우에도 보세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가공무역보증금과 관련하여 비보세구역에서는 기업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 되는가에 따라 보증금 적립의무가 다르지만 보세구역에서는 보증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셋째, 외자기업이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면에서 보세구역은 비보세구역에 비해 수속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보세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판매처가 제한된다는 것과 외주가공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세구역을 활용하여 가공무역제도의 변경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기존에 현지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며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제도가 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가공무역제도 변경이 실제로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기업을 위해 순차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가공무역 자체에 대한 현황 분석은 물론 법규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충충,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경이 한국의 중국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고창,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정책변화와 한국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서정, 『중국 보세구 운영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환곤,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영수·장춘봉,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1호, 2008.
- 최창열,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 한상현,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7집, 2001.
- 韓堅放, “中國における加工貿易の産業構造高度化と課題”, 『關西外國語大學研究論集』, 第90号, 2009.
- 石見辰彦, 『2010年版最新中國貿易・税關實務の詳細解説&實踐マニュアル』, プリコ, 2009.
- 井上和子, 『中國の加工貿易の環境変化と珠江デルタの産業構造高度化』, 日本貿易會 月報, 2007.
- 河原昌一郎・明石光一郎, “中國の加工貿易とFTA戰略”, 『農林水産政策研究』, 第17号, 2010.
- 邢予青, “國際分工与美中貿易逆差; 以iphone爲例”, 『金融研究』, 2011(3).

## ABSTRACT

# A Study on Applicability of the Bonded Area as a Countermeasure of the Change of Chinese Processing Trade System

Yong-Keun, Lee\* · Jae-Sung, Hong\*\*

Since China reformed and opened up itself, processing trade system has enormously contributed to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become driving force of Chinese economic growth. However, due to imbalance of industrial distribution, overproduction of labor-intensive product has expanded, and as a result, mass export of low-value-added products has aggravated trade friction. Also, these low-value-added products have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brought resource waste. On this, Chinese government start to modify system according to strategy for enhancement of processing trade.

In this study, as a countermeasure of the Change of Chinese processing trade system, applicability of the bonded area is suggested. Firstly, even if a company's item is applied to prohibited or restricted items, the company can trade if through the bonded area. Secondly, even if a company has duty of deposit reservation, the company can be exempt from duty of deposit reservation if through the bonded area. Thirdly, as to importing facilities for processing trade, a company can receive more benefit through the bonded area than through outside of the bonded area.

**Key Words** : China, processing trade, bonded area

---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First Author)

\*\* Ph.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Co-Author)